

[주주 여러분께]

## 신주발행공고

주식회사 코리아씨키트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13 년 04 월 05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의안 : 유상증자 결의의 건]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5,000,000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명식 우선주식 791,245주(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 할 수 있으며,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 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확정 발행가액 =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3년 04월 22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3년 04월 23일 ~ 04월 30일
7. 신주의 배정방법:
  - 가. 우리사주조합: 총 공모주식의 20.0%인 보통주 1,000,000주 및 우선주 791,245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후 잔여주식은 구주주에

게 추가 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0.2135117722주 및 우선주 1주당 0.2135116993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다.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13년 04월 23일 (1일간)

(2)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13년 05월 28일 ~ 2013년 05월 29일(2일간)

10. 주금납입일(예정): 2013년 06월 03일

11. 주금납입처: 한국외환은행 안산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3년 01월 01일

13. 모집주선회사: 한국투자증권(주)

14.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국투자증권(주)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국투자증권(주) 본, 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6.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3년 06월 14일

- 단,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7.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3년 06월 17일

18. 주권교부처: 한국예탁결제원

19.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cg.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상증자

1. 주주확정일(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3년 04월 22일
2. 명의개서정지 기간 : 2013년 04월 23일 - 2013년 04월 30일

2013 년 04월 05 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39번길 9

**주식회사 코리아씨키트**

대 표 이 사 이 광 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 경 동